

『경제규제와 법』 논문 심사 및 간행 규정

2008. 04. 30. 제정
2008. 10. 31. 개정
2010. 03. 15. 개정
2014. 08. 01. 개정
2019. 04. 01. 개정
2019. 07. 02. 개정
2019. 07. 16. 개정
2021. 02. 08. 개정
2023. 02. 0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학술지인 경제규제와 법(이하 ‘저널’이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 제출, 심사, 선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회수, 간행일자] ① 저널은 년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행일은 매년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간행할 수 있다.

제3조 [수록물] ① 저널에는 논문, 심결례연구, 해외동향, 입법동향 및 기타자료를 수록한다.

② 저널에 게재할 수록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경제규제에 관한 논문일 것
2. 다른 학회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제4조 [논문수집] ① 간사는 간행일 2월 전에 수록물의 종류, 논문의 제출기한·방법 등을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집논문의 주제와 저자를 선정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해당 저자에게 통지하여 논문을 받는다.

제5조 [논문의 제출] ①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간행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사전에 공지된 논문투고절차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장애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E-mail로 원고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A4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첨]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게재할 수 있다.

④ 본 규정에 의한 ‘논문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은 논문은 수정을 위하여 필자에게 반환한

다.

제6조 [편집위원회] 저널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저널에 적합하고 질 높은 논문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저널에 수록할 논문의 심사·선정
2. 출판사의 선정
3. 논문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4. 그 밖의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 의결정족수] 각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결, 판정 기타 결정은 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0조 [논문심사] ① 저널에 게재될 논문은 내용의 적정성과 학문적 수준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센터의 학술행사에서 외국인이 발표한 논문으로 위원회가 필요한 검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위의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의 투고 논문으로서 위원회의 최종적인 게재결정을 얻어 저널에 게재한다.

1. 센터의 학술행사에 발표된 논문, 기타 센터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2.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논문
3. 박사학위 소지자의 논문
4. 공인된 법률분야 종사자의 논문
5.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박사과정생의 단독논문. 단, 센터 운영위원·자문위원·객원연구원 1인 이상의 추천을 요함.

제11조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편집위원 중 1인이 제출한 논문을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는 등 논문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선정

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⑤ 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5편 이상의 논문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 등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논문제출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제출자에게 비밀로 한다.
- ⑧ 센터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당해 논문의 토론자를 포함시켜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2.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 3. 논문주제의 창의성
- 4. 논문의 논리적 체계성
- 5. 이론적 근거 제시의 적절성
- 6. 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
- 7. 국문/외국어 초록의 적합성
- 8. 기타 논문작성요령 준수

제13조 [심사결과의 확정과 통보] ① 심사위원은 제12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19. 7. 2.>

- 1. 게재가능 :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2. 수정 후 본호게재 :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3. 수정 후 재투고 :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당호게재가 불가하며, 차호 이후에 수정하여 재투고 가능한 때
 - 4. 게재불가 : 저널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② 각 심사결과가 본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13조의2에 따라 각 제출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논문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9. 7. 2.>
- ⑥ 삭제 <2019. 7. 2.>
- ⑦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게재가능’, ‘수정 후 본호게재’로 결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기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

되면 아래의 종합판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최종적인 종합판정을 한다.
<개정 2019. 7. 2.>

※ ○ = 게재가능, □ = 수정 후 본호게재, △ = 수정 후 재투고, × = 게재불가

심사위원의 판정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 ○, ○	게재가능
○, ○, □	
○, ○, △	
○, □, □	수정 후 본호게재
□, □, □	
○, □,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투고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불가

제13조의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에 따라 최종적으로 ‘수정 후 재투고’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② 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즉시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수정지시]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본호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지시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집필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된 기간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처리한다. <개정 2019. 7. 16.>

③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경우라도 위원회의 판단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길 시에는 내용상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저널에 논문을 투고한 자가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15조 [간사]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등 저널 간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센터의 연구원으로 한다.

제16조 [저작권] ① 저널의 편자는 센터의 명의로 한다. 다만, 저널 내에 수록물의 집필자 및 그 소속(공동저자 포함)을 명시한다.

② 센터는 저널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③ 저널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④ 저널 및 게재논문의 저널 또는 센터 명의로 판매수익, 정보공개수익 등은 센터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논문의 전자출판 등] ① 저널은 종이 문서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저널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저널에 투고한 논문은 법률문화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논문의 집필자는 게재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당해 논문은 전송 및 제공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저널의 배포] ① 간행된 저널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② 게재논문의 집필자에게 제1항의 배포분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배부할 수 있다.

제19조 [게재료 지급] 센터는 게재된 논문에 대해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개정] 본 심사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논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도입이 확정된 시점 이후의 간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